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고 잠재력 실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우수한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개 요

- 신청 기간 : **2026. 4. 1.(수) ~ 2026. 4. 30.(목) 17시까지**
- 선정 규모 : **200개 사 내외**
- 선정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신규인증**
 - (스타트업)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19. 4. 2.~'24. 4. 1. 설립)
 - (최초인증)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상('19. 4. 1. 이전 설립)
 - **재인증** : 공고일 기준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26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 ※ 재인증은 1회로 제한(재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인증 기간 : **신규인증 5년 / 재인증 3년**
 - 신규인증 : '26년 10월(예정) ~ '31년 9월
 - 재 인증 : '26년 10월(예정) ~ '29년 9월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기준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6. 4. 1.) 기준
- (소재지) 경기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10)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제출)
-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해당되고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업력 : 신규인증 해당(스타트업 2년 이상 7년 미만 / 최초인증 7년 이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중소기업협동조합 : 조합설립인가증상 ‘설립인가일’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③ 완전자본잠식 기업
- ④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휴면조합

3 인 증 내 용

□ 인증 분야별 규모 : 200개 사 내외(신규인증 165, 재인증 35)

구분		규모(개 사)	업력 기준	유효기간
신규 인증	스타트업	65	2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최초인증	100	7년 이상	
재인증		35	신규 인증 만료 기업 (만료 예정 포함)	3년 (1회 限)

□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역량강화 지원(브랜드 확산 및 광고·홍보)
 - (브랜드확산) 인증마크를 활용한 포장재,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기업당 5백만원 이내)
 - (광고·홍보) 언론 매체를 활용한 기획 기사, 지면 광고 등 기업 홍보 지원
- 타 지원사업 가점 부여, 금리·보증 우대 등 9개 기관 63개 혜택 부여
 - * [참고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혜택 현황

4 신 청 기 간 및 방 법

□ 신청 기간 : **2026. 4. 1.(수) ~ 2026. 4. 30.(목) 17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또는 전자우편 불가)

- 신청서(서식)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 코파인드(data.kofind.co.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코파인드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으로 접수 기간('26. 4. 1. ~ 4. 30.)만 운영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 직전에는 접속량 증가로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증빙서류 항목별 ZIP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

※ 파일명(서식) : 1)요건검토서류_기업명 2)평가증빙서류_기업명 3)가산점증빙서류_기업명

항목	서류명	비고
1) 신청서		
필수	• [서식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신청서	각 파일에 직인 날인 후 PDF 형식으로 업로드
	• [서식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식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 [서식5]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6]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2) 요건 검토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자동 발급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 귀속분)	
	• 법인등기부등본	
필수(협동조합)	• 조합설립인가증 ※ 중소기업은 해당 없음	
선택	• 공장등록증명 및 공장 소재지 기준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본사가 경기도 외 소재인 기업은 필수 제출	
필수 (재인증)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 분실 시 인증현판 사진 제출	
3) 평가 증빙서류		
선택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23년~'25년)	자동 발급
	• 지식재산권, 핵심특허,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인증 등 평가 증빙서류	
4) 가산점 증빙서류		
선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 증빙	
	• 경기도 인증(지정) 기업 및 직장 내 복리후생 증빙	

5 추진 일정

일정	세부 내용	시기
사업 공고	▶ 경기도청 공고 및 경기기업비서	'26. 4. 1.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제출(data.kofind.co.kr)	~ '26. 4. 30.
↓		
요건 및 서류 평가	▶ 자격 요건(소재지, 업력 등) ▶ 서류평가(재무제표 등으로 정량평가)	'26. 5. ~ 7.
↓		
현장 실사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	'26. 8.
↓		
유망중소기업 선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안내 ※ 메일·문자 안내하므로 연락처 변동 시 best@gbsa.or.kr 로 사전 고지 必 ▶ 경기도청 홈페이지 선정기업 공고	'26. 10.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진 촬영 등	'26. 10.

6 기 타

- **감점사항**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대상)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1. 공정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2. 노동 분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4. 납세 분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제한)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단, 법 위반 사실이 감점 유예대상 47개 법위반행위(참고 4)에 해당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인증서 지정 취소 사항 : 아래의 해당될 경우 인증 취소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③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④ 폐업, 부도, 영업중단 등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⑤ 도외 이전으로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
- ⑥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7 문의처

□ 사업 관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best@gbsa.or.kr)

- (사업 관련사항) ☎ 031-259-6285
- (기존 인증이력 확인) ☎ 031-259-6115, 6118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이메일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 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 등 : ☎ 02-3279-6500

참고 사항

1. 자주묻는 질문(FAQ) 7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혜택 현황 9
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 11
4. 감점 유예 대상 47개 범위반행위 목록 15

붙임 서류

1.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등)
2. 인증신청 가이드북(필독)
3. 코파일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FAQ)

<p>Q1. 본사는 타 광역지자체에 있는데 공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p>
<p>A1. <u>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u>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인 경우 건축물 대장) 및 지방세납세증명(공장소재지 기준)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영업사무소(지점) 및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만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p>
<p>Q2. 기본 요건(사업영위기간 2년) 미만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p>
<p>A2. 신청 불가합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경기도의 대표인증으로 공신력의 확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률 등 평가를 위해 최근 2년 이상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본 요건> <input type="checkbox"/> 스타트업: 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도내 중소기업('19.4.2.~'24.4.1. 설립) <input type="checkbox"/> 최초인증: 공고일 현재 업력 7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19.4.1 이전 설립) <input type="checkbox"/> 재 인증: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p>
<p>Q3. 업력은 7년 이상이지만 타 지역(광역단체기준)에서 이전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최초인증 신청 가능한가요?</p>
<p>A3.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총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최초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p>
<p>Q4.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한가요?</p>
<p>A4. <u>온라인 신청만</u>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수)부터 4월 30일(목) 17시까지 코파인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p>
<p>Q5. 몇 점이 되어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p>
<p>A5. 유망중소기업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은 당해연도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200개사 내외로 선정하므로 매년 커트라인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커트라인 미공개</p>
<p>Q6.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언제 배부되나요?</p>
<p>A6.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선정발표 후 제작되며 2026년 10월경 유망 인증서 수여식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인증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해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경우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p>

Q7.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7. 증빙서류 제출 시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과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을 계속해서 영위하며, 포괄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사업주체로 인정하여 형태 변경 전 기업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사업주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기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개인기업의)폐업사실증명원

Q8.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사업영위기간의 인정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은?

A8. 흡수합병으로 볼 경우[(한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상태(존속기업)에서 다른 회사가 소멸(피합병기업)하면서 인수합병 절차를 거치는 것)] 피합병된 기업과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하고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이 존속기업의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동일주체로 간주하여 피합병 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합병의 경우(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의 목적을 두고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되는 것)는 신설합병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사업영위기간 기산을 하여 평가반영합니다. 합병에 따른 재무실적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 기준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9.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최초인증 당시 기업명과 다릅니다. 상호변경 시 재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후)를 확인하여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주체(동일 사업자번호 및 동일 대표자, 동일 업종 영위 등)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증기간 중 기업명, 대표자성함,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유망중소기업 대표메일(best@gbsa.or.kr)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유망중소기업 지정 이후 지정 취소 되는 경우가 있나요?

A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제9조(인증의 취소) 및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제한 조례」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폐업, 부도, 영업중단 등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도외이전으로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
6.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인증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참고 2] 2026년 유망중소기업 혜택 현황(9개 기관 63개)

구 분	내 용	
경기도 (4)	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기업육성과]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기업육성과]
	3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브랜드확산, 광고홍보) [기업육성과]
	4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가점 3점) [기업육성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6)	5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가점 2점)
	6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가점 2점)
	7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가점 2점)
	8	경기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가점 2점)
	9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가점 3점)
	10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가점 1점)
	11	경기도 섬유(피혁)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가점 2점)
	12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가점 1점)
	13	GMS(GBC 마케팅사업)(가점 2점)
	14	해외 G-FAIR(가점 2점)
	15	수출멘토링 지원사업(가점 2점)
	16	수출SOS 기업지원사업(가점 2점)
	17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가점 2점)
	18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가점 2점)
	19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가점 2점)
	20	경기도 통상촉진단(가점 2점)
	21	양주시 국내외규격인증 지원사업(가점 2점)
	22	평택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가점 1점)
	23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가점 1점)
	24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가점 1점)
	25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강화사업(가점 1점)
	26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가점 1점)
	27	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바이오센터 입주 심사(가점 5점)
	28	경기도 국내복귀 지원사업(가점 1점)
	29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파견사업 지원(가점 2점)
	30	파주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31	안성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가점 1점)

구 분	내 용	
	32	이천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가점 1점)
	33	평택시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가점 1점)
	34	평택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가점 1점)
	35	경기도 첫걸음R&D 기업연구소 지원사업(가점 1점)
	36	안성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37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 입주심의위원회(가점 1점)
	38	경기도 ESG 경영지원 사업(가점 1점)
	39	의왕시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40	광명시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경기테크노파크(11)	41	하남시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가점 1점)
	42	경기행복샵 입점지원(가점 2점)
	43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신청 시 무심사 합격
	44	성남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가점 1점)
	45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사후관리)(가점 5점)
	46	안산시 청년창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가점 1점)
	47	광주시 e장터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가점 1점)
	48	양주시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마케팅 지원(가점 1점)
	49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 지원(가점 2점)
	50	양평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가점 1점)
	51	지식재산 보호강화(가점 5점)
경기신용보증재단(4)	5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평가(가점 5점)
	5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0.3%)
	54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용평가(가점 1점)
	55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시 보증료 인하(0.2%)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 (4)	56	회원가입 입회비(200,000원) 면제
	57	경기도 지원 ‘품질경영개선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58	최고 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할인(10%)
	59	국제인증 최초 신규취득 할인(20%)
한국은행 경기본부(1)	60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전략지원부문의 「경기도 추천기업」으로 인정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1)	61	무역기금 용자사업(가점 5점)
한국무역보험공사(1)	62	무역보험 보험료 할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본부(1)	63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지원사업(가점 5점)

[참고 3]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

□ 기준 개요

○ 신규인증(스타트업, 최초인증)

평가 항목		배점
경영평가(40점)	·매출규모	5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10
	·안정성(부채비율)	10
	·생산성(부가가치율)	5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10
	·핵심특허 가치평가	5
	·연구개발전담인력(석/박사)	5
	·투자유치실적	10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직접수출)	10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	

○ 재인증

평가 항목		배점
지속가능경영능력(45점)	·성장성 I(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0
	·성장성 II(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	10
	·수익성(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안정성(부채비율)	10
	·생산성(부가가치율)	5
비즈니스혁신노력(35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10
	·핵심특허 가치평가	5
	·연구개발전담인력(석/박사)	5
	·투자유치실적	5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직접수출)	5
	·수출액 증가율	5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세계일류상품 인증	

○ 가산점(최대 10점)

평가 항목		배점
기업 유형	·여성기업	각 2점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경기도 인증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각 1점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유망기후테크기업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경기도 G-마크 인증기업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생활임금 참여기업 인증기업(재인증 限)	
	·경기도 착한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경기도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경기도 임팩트유니콘 기업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직장 내 복지후생 제도 운영		
성장 사다리 연계	·신규인증 만료 후 5년 이내 재인증 신청기업	2점

□ 세부 기준

분류	평가항목	산출지표	평가방법				
경영 평가 (40)	1. 매출규모(5점)	당기 매출액(직전년도)	스타트업	$\min[\max[1, 5 \times \frac{\text{당기 매출액}}{20\text{억원}}], 5]$			
			최초인증	$\min[\max[1, 5 \times \frac{\text{당기 매출액}}{80\text{억원}}], 5]$			
	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10점)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 × 100)	$\min[\max[1, 10 \times \frac{\text{영업이익률}(\%)}{7.1\%}], 10]$				
	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10점)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 100)	$\min[\max[1, 10 \times \frac{\text{매출액증가율}(\%)}{26.5\%}], 10]$				
	4. (안정성) 부채비율(10점)	(당기부채/당기자기자본 × 100)	$\min[\max[1, 10 \times \frac{129.1\%}{\text{부채비율}(\%)}], 10]$				
5. (생산성) 부가가치율(5점)	(부가가치/매출액 × 100)	$\min[\max[1, 5 \times \frac{\text{부가가치율}(\%)}{33.6\%}], 5]$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직전년도말), 전기(전전년도말)							
비즈니스 혁신 노력 (40)	1. 기술개발투자(10점)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min[\max[1, 10 \times \frac{\text{기술개발투자율}(\%)}{4.8\%}], 10]$				
	[기술개발투자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 경상개발비연구비						
	2. 지식재산권 보유수준(10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건당 2점, 최대 10점				
	3. 핵심특허 가치평가(5점)	국내등록특허 중 핵심특허로 제출한 대표특허 1건에 대한 특허평가* 점수	AAA~A	5점	B	2점	
			BBB	4점	CCC~C	1점	
BB			3점	미제출	0점		
* 특허공보에서 열람가능한 공개된 국내특허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kipa.org)을 이용하여 평가 (특허 평가는 등록 후 공고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 가능)							
4. 연구개발전담인력(석/박사)(5점)	(석박사종업원수/총종업원수 × 100)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10%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미보유
5. 투자유치실적(10점)	라운드별 투자 금액에 따라 배점 적용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시리즈 C이상	시리즈 B이상	시리즈 A이상	Pre 시리즈A	시드	미제출
		150억 이상	40 ~ 150억 원	20 ~ 40억원	5~20 억원	~5억원	
해외 시장 개척 노력 (10)	1. 수출액 비중(10점)	(당기 수출액/ 매출액 × 100) * 직전년도 직접수출만 인정	Min{배점한도 10점, (신청기업의 수출액비율/8.53*) × 10}				
[수출액 원화환산 기초자료: 하나은행, 매매기준을 기준 최고고시] 직전년도 12.31. 기준환율 1,447원/달러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 평균값							
기타 특성 평가 (10)	① 정부 R&D 사업 등 참여	⑥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① ~ ⑩ 항목 중 건당 2점, 최대 10점 * 유효기간내에 있는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상세내용은 가이드북의 유의사항내 참조				
	② 경영체제인증(ISO 9001, ISO14001 등)	⑦ 중기부 INNO-BIZ 또는 MAIN-BIZ					
	③ 해외품질(규격)인증	⑧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④ 국내품질(규격)인증	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⑤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⑩ 벤처기업					
가점 (최대 10점)	1. 기업유형 (각 2점)	2. 경기도 인증[지정]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각 1점) * '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분류	평가항목	산출지표	평가방법				
경영 평가 (45)	1. (성장성) 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10점)	(직전년도 매출액/전전전년도 매출액) ^{^(1/2)} - 1	min[max[1, 10 × $\frac{\text{매출액증가율}(\%)}{15\%}$], 10]				
	[매출액증가율] 증가율은 최근 3년간('23년~'25년) CAGR값 *CAGR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						
	2. 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10점)	직전년도 말 종업원 - 전전전년도 말 종업원 수	고용인원 증가 수 1명당 2점, 최대 10점				
	[고용인원 증가] 종업원수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3.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10점)	(3년간 영업이익합계/3년간 매출액합계) × 100	min[max[1, 10 × $\frac{\text{영업이익률}(\%)}{15\%}$], 10]				
	4. (안정성) 부채비율(10점)	(당기부채/당기자기자본 × 100)	min[max[1, 11.8 - $\frac{9}{250}$ × 부채비율(%)], 10]				
	5. (생산성) 부가가치율(5점)	(부가가치/매출액 × 100)	min[max[1, 5 × $\frac{\text{부가가치율}(\%)}{34.4\%}$], 5]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직전년도), 전기(전전년도), 전전기(전전전년도말)							
비즈 니스 혁신 노력 (35)	1. 기술개발투자(10점)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min[max[1, 10 × $\frac{\text{기술개발투자율}(\%)}{10\%}$], 10]				
	[기술개발투자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 경상개발비연구비						
	2. 지식재산권 보유수준(10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건당 2점, 최대 10점				
	3. 핵심특허 가치평가(5점)	국내등록특허 중 핵심특허로 제출한 대표특허 1건에 대한 특허평가* 점수	AAA~A	5점	B	2점	
			BBB	4점	CCC~C	1점	
			BB	3점	미제출	0점	
	* 특허공보에서 열람가능한 공개된 국내특허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kipa.org)을 이용하여 평가 (특허 평가는 등록 후 공고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 가능)						
4. 연구개발전담인력(석/박사)(5점)	(석박사종업원수/총종업원수 × 100)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10%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미보유
5. 투자유치실적(5점)	라운드별 투자 금액에 따라 배점 적용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시리즈 C이상	시리즈 B이상	시리즈 A이상	Pre 시리즈A	시드	미제출
		150억 이상	40 ~ 150억원	20 ~ 40억원	5~20억원	~5억원	
해외 시장 개척 노력 (10)	1. 수출액 비중(5점)	(당기 수출액/ 매출액 × 100) * 직전년도 직접수출만 인정	Min{배점한도 5점, (신청기업의 수출액비율/8.53*) × 5}				
	2. 수출액증가율(5점)	(직전년도 수출액/전전전년도 수출액) ^{^(1/2)} - 1	min[max[1, 5 × $\frac{\text{수출액증가율}(\%)}{15\%}$], 5]				
	[수출액 원화환산 기초자료: 하나은행, 매매기준을 기준 최고고시] 직전년도 12.31. 기준환율 1,447원/달러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 평균값						
기타 특성 평가 (10)	① 정부 R&D 사업 등 참여	⑥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① ~ ⑩ 항목 중 건당 2점, 최대 10점 * 유효기간내에 있는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상세내용은 가이드북의 유의사항안내 참조				
	② 경영체계인증(ISO 9001, ISO14001 등)	⑦ 중기부 INNO-BIZ 또는 MAIN-BIZ					
	③ 해외품질(규격)인증	⑧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④ 국내품질(규격)인증	⑨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⑤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⑩ 세계일류상품 인증					
가점 (최대 10점)	1. 기업유형 (각 2점)	2. 경기도 인증[지정]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각 1점) * '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3. 성장 사다리(신규인증-재인증) 연계 (2점)				

참고 4

감점 유예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예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